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8-06-05

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

판 결

사 건	2018가단999 근저당권말소등기 등
원 고	A
피 고	1. B
	2. [redacted]시
변 론 종 결	2018. 4. 3.
판 결 선 고	2018. 4. 24.

주 문

1.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,

 가. 피고 B는 [redacted]지방법원 [redacted]등기소 2017. 3. 7. 접수 제1724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,

 나. 피고 [redacted]시는 위 가.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에 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.

2.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8-06-05

이 유

1. 청구원인

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설정된 피고 B 명의의 주문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는 애초부터 존재하지 않았거나 2017. 6. 7.경 소멸되었다.

[인정근거] 피고 B : 다툼 없는 사실

피고 영천시 :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판단

근저당권이 있는 채권이 가압류되는 경우,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부기등기의 방법으로 그 피담보채권의 가압류사실을 기입등기하는 목적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가압류되면 담보물권의 수반성에 의하여 종된 권리인 근저당권에도 가압류의 효력이 미치게 되어 피담보채권의 가압류를 공시하기 위한 것이므로, 만일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가압류명령은 무효라고 할 것이고, 근저당권을 말소하는 경우에 가압류권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근저당권의 말소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(대법원 2004. 5. 28. 선고 2003다70041 판결).

원고에게, 피고 B는 원인무효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, 피담보채권 소멸 후인 2017. 8. 21. 피고 B의 근저당권부 채권을 압류한 피고 [redacted]시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.

3. 결론

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.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8-06-05

판사 조양희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8-06-05

별지

부 동 산 의 표 시

1. 1동의 건물의 표시

서울특별시 동대문구 [redacted] 제동관동

(도로명주소 :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[redacted])

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

건물의 번호: 제1층 제89호

구조: 철골철근콘크리트

면적: 6.61㎡

대지권의 표시

토지의 표시 1.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[redacted] 대 3866.8㎡

대지권의 종류 1 소유권대지권

대지권의 비율 3866.80분의 2.67

-이 상-